

제195회 영등포구의회  
2016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6. 21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46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· 복지증진, 취약계층에게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협동조합임으로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2,500원 미만인 경우 40,200원으로 감면하는 조항 신설 (안 제9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,  
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하여登記할 때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고,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취약계층<sup>1)</sup>에게 복지·의료·환경 등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,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등 주로 공익적 비영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- 따라서,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면조항 신설은 타당해 보임.

---

1)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북한이탈주민, 가정폭력피해자, 한부모가정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대상자 등

- 또한, ‘사회적 협동조합’과 성격이 유사한 ‘사회적 기업’의 경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50%, 등록면허세 50%, 재산세 25%를 감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, 세제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감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(※조합과 기업 비교표 첨부)
- 아울러 ‘사회적 협동조합’ 등록면허세 경감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감규정이 아니고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임.
- 현재, 영등포구 소재 ‘사회적 협동조합’은 7개소이며, 사업 초기단계로 대부분 출자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등록면허세 경감(112,500원⇒40,200원)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, 감면에 따른 구 세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임.

(단위:천원)

연번	소재지	법인명	설립일	자본금
1	한국금속스크랩 리사이클	영등포동8가	2014.8. 7	10,000
2	서울의료복지	대림3동	2013.9.16	80,050
3	아이쿱	영등포본동	2013.4.25	92,000
4	미래환경	당산동6가	2013.4. 2	37,000
5	글로벌시민양성	여의동	2013.3. 6	10,000
6	한국사회적경영 연구원	여의동	2013.5.14	7,000
7	소셜영상홍보 공작소	양평동5가	2013.6.19	8,000

※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본금의 1,000분의 2임.

〈붙임〉

##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교표

구 분	사회적 협동조합	사회적 기업
설립근거	협동조합 기본법	사회적기업 육성법
조직형태	비영리 법인	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, 비영리 민간단체 등
의사결정	조합원1인당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	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
인가권자	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	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
정 의	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	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주된 사업	○ 취약계층에게 복지·의료·환경 등 사회서비스 제공 ○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	○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
세재혜택	○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경감	○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경감 ○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100분의 50경감 ○ 재산세 100분의 25경감

# 참 고 자 료

## 1 협동조합 기본법

**제85조(설립인가 등)**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93조(사업)**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.

1. 지역(시·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,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사회의 재생, 지역 경제의 활성화, 지역 주민들의 권익·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·의료·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
4.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5.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

## 2 지방세특례제한법

**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(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)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22조의4(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)*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1.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2.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3.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

### 3 지방세법

**제28조(세율)**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.

#### 6. 법인 등기

나.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

(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)

- 1) 설립과 납입: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
- 2)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: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

다.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(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):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

라.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: 건당 11만2천5백원

마.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: 건당 4만2백원

바. 그 밖의 등기: 건당 4만2백원